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이해민·김준형·서왕진

차규근・신장식・조 국

김재원 • 박은정 • 황운하

정춘생 · 김선민 · 최민희

강경숙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연구개발(R&D)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음. R&D 예산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으며,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임.

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2024년 국가연구개발(R&D)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음.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,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위치인 대학원생, 학생연구자,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. 또한,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와 기재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음.

이에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, R&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&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 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&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(안 제7조제3항·제4항·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대비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
	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
	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
	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
	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
	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
	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
	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
	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때 전
	년도 대비 재원배분 규모를 축
	소하려는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
	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
	이유를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
	<u>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제3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연구
	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
	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
	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
	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
	여야 한다.

<u>③</u> ~ <u>⑪</u> (생 략)

<u>⑥</u> ~ <u>⑭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11 항까지와 같음)